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에 대한 해설



글 / 임 현 석 세무사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제도의 종류

- 법정제 :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임금을 퇴직시 지급(예 : 5년 근속시 150일분 임금)
- 누진제 :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계산한 일수의 임금을 퇴직시 지급(예 5년 근속시 200일분 등)
- 연봉제 : 연봉계약기간(보통 1년) 만료시 퇴직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원인

- 퇴직금제도 변경시(누진제→법정제) 그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그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됨.
-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보통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함
- 기타 노·사협외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

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

(1) 퇴직금제도 변경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시 지급하되, 변경전·후의 퇴직금을 구분계산하는 방식

- ①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누진일수로, 변경 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법정일수(1년당 30일)로 계산하고, 그 일수를 통산하여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 퇴직소득
- ② 변경전·후의 퇴직금을 구분 계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되,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 퇴직소득
 - 한편으로는 이자성격을 가지나(변경전 퇴직금×이자율), 기본적으로는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의 일부로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종전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상승을 대신 일정 이자율) 퇴직소득으로 불이 타당함.

(2)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전의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방식

- ③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 퇴직소득
- ④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 퇴직소득

* 최초 지급시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

- ⑤ 중간정산 퇴직금을 확정하고, 분할지급하면서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 이자소득
 - 본질적으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지급지체에 따른 이자이며, 미지급잔액은 소비대차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퇴직소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자상당액에 대응하는 근속기간이 없음.

(3)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방식

- ⑥ 차액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 → 퇴직소득
 -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함.
 -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퇴직시 합산
- ⑦ 차액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 ⑥과 같이 구분

(4) 퇴직금을 매년(연봉계약기간)마다 정산하는 방식

- ⑧ 기간종료후 일괄지급하는 경우 → 퇴직소득
- ⑨ 기간 중 분할지급하는 경우 → 퇴직소득
 -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방법은 근로소득과 같으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아야 함 → 퇴직금의 선급으로 처리한 후 기간

종로서 합산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 ※ 연봉제하에서는 연봉과 퇴직금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이를 악용하여 퇴직금쪽에 많은 배분을 할 경우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음 → 퇴직소득으로 보는 범위를 소득세법령에 규정할 필요(예 :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임금을 한도로 함)

■ 관련 예규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진출한 후, 전입한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그 사용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퇴직급여지급규정 내용 : 전입후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5년 미만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대신 전입시 산정된 종전 법인에서의 퇴직금에 8%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에 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협회 2000년도 교육실시계획 안내

- 새천년 새출발은 협회 교육과 함께 -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1900년대를 보내고 이제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해묵었던 과거의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21C를 충실히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상 우리의 자질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안일한 생각으로 나 하나 쯤이야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 갔습니다. 사회재교육이 능력의 차이에 따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전력기술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기술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협회도 금년부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강의체계 개선과 영상교육화를 도입하여 과거의 교육과 다르게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현실성 있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회원여러분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새롭게 교육의 질적향상과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금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안내하오니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의 교육과정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교육
 -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자로서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체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협회에 납부한 교육비의 50~70%를 국가(고용보험)에서 교육비를 부담한 사업주에 지원

가. 교육과정 및 교육비

교육과정		일수(시간)	횟수	정원(명)	교육비(원)
전기안전교육	안전관리기술	3일(24)	14	60	110,000
	안전진단기술	3일(24)	14	60	110,000
감리기술교육	감리기본기술	3일(24)	5	60	110,000
	감리전문기술	5일(40)	12	60	180,000
설계기술교육		3일(24)	1	60	110,000
시공기술교육		3일(24)	1	60	110,000

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과정		교육과목
전기안전교육	안전관리기술	전력실비계획과 운용
		수변전설비의 안전관리 및 합리적운용
		전력관리효율화운영기법
		전력계통의 보호방법과 이상현상
	안전진단기술	PLC트러블 진단 및 대책
		전기설비접지기술
		전력설비의 고장예지 및 진단기술
		노이즈 및 고조파방지대책
감리기술교육	감리기본기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절차, 대가 및 배치기준
		전력설비기술검토
		전력시설물설계도서검토 및 적산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실무
		국가계약제도 해설
	감리전문기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행정실무
		수변전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감리실무
		구내배전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감리실무
		전기사용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감리실무
		예비전원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감리실무
설계기술교육	전원설비의 설계기법	
	배전 및 방재설비의 설계기법	
	제어·통신설비의 설계기법	
시공기술교육	수변전 및 구내배전설비의 시공기법	
	지중배전설비의 시공기법	
	비상전원설비의 시공기법	
	접지설비의 시공기법	



다.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 육 과 정		회 차	교 육 기 간	접수 및 실시
전기안전교육	안전관리기술	1	4. 10 ~ 4. 12	부 산 지 부
		2	4. 17 ~ 4. 19	서울남동지부
		3	5. 1 ~ 5. 3	광주·전남지부
		4	5. 8 ~ 5. 10	서울남서지부
		5	5. 22 ~ 5. 24	충 북 지 부
		6	6. 7 ~ 6. 9	전 북 지 부
		7	6. 12 ~ 6. 14	경 기 북 지 부
		8	6. 26 ~ 6. 28	충 남 지 부
		9	7. 3 ~ 7. 5	경 기 지 부
		10	8. 16 ~ 8. 18	인 천 지 부
		11	8. 21 ~ 8. 23	경 남 지 부
		12	9. 4 ~ 9. 6	대 전 지 부
		13	10. 23 ~ 10. 25	서울북서지부
		14	11. 13 ~ 11. 15	서울북동지부
	안전진단기술	1	4. 24 ~ 4. 26	충 남 지 부
		2	5. 1 ~ 5. 3	서울북서지부
		3	5. 15 ~ 5. 17	경 북 서 지 부
		4	5. 29 ~ 5. 31	울 산 지 부
		5	6. 7 ~ 6. 9	경 기 지 부
		6	6. 19 ~ 6. 21	강 원 지 부
		7	7. 24 ~ 7. 26	서울북동지부
		8	8. 16 ~ 8. 18	대 구 지 부
		9	8. 28 ~ 8. 30	서울남서지부
		10	9. 25 ~ 9. 27	인 천 지 부
		11	10. 4 ~ 10. 6	경 북 동 지 부
		12	10. 16 ~ 10. 18	경 기 지 부
		13	10. 30 ~ 11. 1	서울남동지부
		14	11. 13 ~ 11. 15	제 주 지 부
감리기술교육	감리기본기술	1	3. 27 ~ 3. 29	서울남동지부
		2	4. 17 ~ 4. 19	부 산 지 부
		3	5. 15 ~ 5. 17	서울남서지부
		4	8. 28 ~ 8. 30	대 구 지 부
		5	10. 9 ~ 10. 11	광주·전남지부
	감리전문기술	1	4. 10 ~ 4. 14	서울북서지부
		2	4. 24 ~ 4. 28	서울북동지부
		3	5. 22 ~ 5. 26	경 기 북 지 부
		4	5. 29 ~ 6. 2	서울남동지부
		5	6. 12 ~ 6. 16	부 산 지 부
		6	6. 19 ~ 6. 23	광주·전남지부
		7	7. 24 ~ 7. 28	대 전 지 부
		8	8. 21 ~ 8. 25	경 기 지 부
		9	9. 25 ~ 9. 29	충 남 지 부
		10	10. 16 ~ 10. 20	경 남 지 부
		11	11. 6 ~ 11. 10	인 천 지 부
		12	11. 27 ~ 12. 1	서울남서지부
		설 계 기 술 교 육		1
시 공 기 술 교 육		1	10. 9 ~ 10. 11	본 부

※ 교육장소는 추후 별도로 안내합니다.

※ 본부에서도 모든 교육을 연중접수합니다.

2. 실무능력향상교육

- 전력기술인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자가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도록 실시하는 1일과정의 교육임

가. 교육과정 및 교육비

교 육 과 정	일 수(시간)	정 원(명)	교 육 비(원)
전력설비계획과 운용 외 15과목	1일(8)	60	과목별 35,000

나. 교육과목

교 육 과 정	교 육 과 목
과목별 교육	전력설비계획과 운용
	수변전설비의 최적관리와 트러블대책
	전력계통보호방법과 이상현상
	전력관리효율화운영기법
	PLC트러블 진단 및 대책
	전기설비접지기술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수행절차, 대가 및 배치기준
	전력설비기술검토
	전력시설물설계도서검토 및 적산
	수변전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감리실무
	구내배전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감리실무
	전기사용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감리실무
	에비전원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감리실무
	지중배전 및 송전케이블 공사감리실무
	국가계약제도 해설
노이즈 및 고조파 방지대책	

다. 교육일정(본부 실시)

회 차	교 육 과 목	일 자	접 수 처
1	전력설비계획과 운용	8. 7	본부 및 지부
2	수변전설비의 최적관리와 트러블대책	8. 8	"
3	전력계통보호방법과 이상현상	8. 9	"
4	전력관리효율화운영기법	8. 10	"
5	PLC트러블 진단 및 대책	8. 11	"
6	전기설비접지기술	9. 18	"
7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수행절차, 대가 및 배치기준	9. 19	"
8	전력설비기술검토	9. 20	"
9	전력시설물설계도서검토 및 적산	9. 21	"
10	수변전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감리실무	9. 22	"
11	구내배전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감리실무	10. 4	"
12	전기사용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감리실무	10. 5	"



회 차	교 육 과 목	일 자	접 수 처
13	예비전원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감리실무	10. 6	본부 및 지부
14	지중배전 및 송전케이블 공사감리실무	12. 4	"
15	국가계약제도 해설	12. 5	"
16	노이즈 및 고조파 방지대책	12. 6	"

3. 교육신청방법

가. 교육신청

- 교육신청 접수는 협회 각 해당지부 및 본부에서 과정별로 연중 선착순 접수하며, 당해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접수합니다(희망하시는 교육훈련일정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및 교육비 납부는 협회 방문신청·납부, 우편신청(신청서·소액환 동봉), FAX신청(신청서·은행계좌입금) 방법이 있습니다.
- FAX 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비 송금전표의 송금자명을 신청서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교육접수는 교육과정의 신청서와 교육비가 접수 및 납부되어야 인정됩니다.

나. 교육비·교육신청서 및 교육접수 확인방법

- 방문신청
 - 해당지부 및 본부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교육비 및 신청서 제출 → 교육납입 영수증 발급)
- 우편신청
 - 교육비를 우체국소액환으로 바꾸어 신청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협회 송부 → 접수확인(전화문의)
- 온라인신청
 - 교육비 온라인 입금 → 신청서 및 교육비 송금전표 FAX로 송부 → 접수확인(전화 문의)

다. 기타사항

- 모든 교육은 1일 8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교육은 비합숙교육으로서 숙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교육접수자가 접수한 교육일정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실 경우에는 7일전까지 접수처로 그 사유를 FAX로 통보하셔야 하며, 통보없이 불참할 경우 연기 또는 환불 등 조치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교육 참석시에는 자격증 등 관련 수첩과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시 교육비 납부 영수증(노동사무소 제출용) 및 수료증을 수령하시기 바라오며, 교육비의 지원금 수령절차는 교육기간중에 배부하는 안내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 교육실시일정은 협회사정과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 이외의 교육사항에 대한 문의는 협회 기술교육실 교육훈련과 ☎ 02)888-4224(교환 321, 322, 324) 또는 각 해당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생동안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 존 라보크